WORLD TRADE ORGANIZATION

G/TBT/N/AUS/194

2025-12-03

(25-8052)

페이지: 1/3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원본: 영어

통보

다음 고지는 10.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

1. 통보국가: 호주

해당할 경우,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3.2 및 7.2):

2. 담당기관(Agency responsible):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스포츠·예술부

3. 조항 2.9.2 [X], 2.10.1 [ ], 5.6.2 [ ], 5.7.1 [ ], 3.2 [ ], 7.2 [ ], 기타에 근거해 통보:

4. 해당제품(HS 또는 국정세율 품목. 해당할 경우,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운전자 포함 10인 이상 운송용 화물자동차 (HS code(s): 8702), 일반 도로 차량(ICS code(s): 43.020)

5. 제목(페이지수, 언어, 열람 방법):

- 공개초안—차량 표준(호주 설계 규칙 114/00-이산화탄소 배출 측정)
- 차량 표준 설명문 초안(호주 설계 규칙 114/00-이산화탄소 배출 측정)
- 호주 신차 효율 표준을 위한 경차의 형식승인 CO2 배출값 변환방법, 국제청정교통위원회 작성

(129페이지, 영어), (14페이지, 영어), (36페이지, 영어)

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AUS/25_08270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AUS/25_08270_01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AUS/25_08270_02_e.pdf

지상 교통 배출 감축과
지상 교통 배출 및 정책부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스포츠·예술부
cleanercars@infrastructure.gov.au

6. 내용:

호주 정부는 총 차량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고 3,855kg 미만인 특정 차량에 대해 신차효율표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차량 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본 통보는 호주 정부가 2027년 1월 1일부터 총 차량 중량(GVM 또는 최대 적재 차량 중량)이 3,500~3,855kg인 특정 차량에 대해 이산화탄소(CO2) 배출 시험 요건을 의무화하기 위한 새로운 차량 표준[호주 설계 규칙 114/00-이산화탄소 배출 측정]을 채택할 의도를 설명한다. 이 규칙제정안은 차량 총 중량 등급 최대 8,500파운드의 차량에 적용되는 미국의 경차 표준과 호주의 CO2 시험 요건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새로운 차량표준은 GVM이 최대 4,500kg인 소비자용으로 판매되는 차량(예: 대형 SUV 및 픽업트럭)을 2024년 신차효율표준법(NVES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제안된 것이다. 이는 2024년 3월 통지(G/TBT/N/AUS/166)된 호주 정부의 '더 청정하고, 더 경제적으로 운행되는 차: 호주 신차효율표준 영향 분석'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이 NVES 법은 2025년부터 호주에 GVM 등급 최대 4,500kg인 차량을 공급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판매량 가중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설정한다. NVES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공급된 모든 NVES 법 적용 차량에 대한 준수 평가가 시행되었다.

NVES 법은 호주 정부의 승인 차량 등록부(RAV)에 등록된 각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사용하여 제조업체가 NVES를 준수하는지 판단하도록 한다. RAV에 보고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관련 호주 설계 규칙에 따라 측정된다.

호주 정부는 2024년 11월 27일에 2024년 신차효율표준 결정을 채택하여 ADR에서 CO2 시험절차가 의무화되지 않은 차량(예: GVM이 3,500kg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ADR에서 CO2 배출시험이 의무화된 다음 연도까지 NVES 법준수 평가에서 면제하도록 하였다.

현제 적합한 시험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호주 정부는 GVM이 3,500kg을 초과하고 3,855kg 미만인 차량은 2027년 1월 1일부터 CO2 배출시험을 받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2027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차량을 NVES 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해 2024년 신차효율표준 결정을 개정하는 추가 규칙제정을 제안한다. 2026~2027년에는 3,855~4,500kg의 특정 차량에 대한 CO2 시험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30년부터 NVES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 표준안은 WLTP 또는 미국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된 차량이 NVES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변환 절차를 채택한다.

2024년 신차효율표준법(NVES 법)에서 규정하는 CO2 배출 목표가 UN 규정 No. 101(일반적으로 '신유럽주행사이클' 또는 NEDC로 알려짐)에서 채택한 시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DR 114/00 초안의 부록 B에서는 WLTP 또는 40 CFR 600으로 시험된 차량이 신차효율표준에 맞추어 승인 차량 등록부(RAV)에 보고할 동등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변환 절차는 호주 정부가 국제청정교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신차효율표준에 관심 있는 차량 제조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된 '배출시험 기술 실무그룹'과 협의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 변환 절차에 대한 보조 분석 사본은 본 통보에 첨부되어 있다.

제조업체가 이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제안된 ADR 114/00은 UN 규정 No. 101에 따라 차량을 시험하여 NVES 법을 준수하기 위해 RAV에 보고되는 CO2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 **적용할 경우,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 현재 호주 GHG(온실가스) 배출량의 21%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경승용차와 상용차량에서 발생한다. 이 조치안은 파리협정 제4조에 근거한 호주의 업데이트된 국가결정기여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보호

8. **관련 문서:**

- 신차효율표준결정안 (2024년)
- 2024년 신차효율표준법

관련 통보:

- G/TBT/N/AUS/166

9. **채택 예정일:** 미정

시행 예정일: 미정. 2027년 1월 1일부터 공급되는 GVM 최대 3,855kg의 특정 차량에 대해 의무 준수를 도입하여, 해당 차량을 2027년 7월 1일부터 NVES 법률에 따른 준수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10. **의견 제출:**

의견 마감일: 2026-01-12

[ ] 통보일로부터 60일

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WTO TBT 질의처
국제무역협상국
외교통상부
Canberra
전화: +(61) 2 6261 1111
이메일: tbt.enquiry@dfat.gov.au
웹사이트: https://www.dfat.gov.au/